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경훈 의원 외 17명
- 나. 의안번호: 제1373호
- 다. 발의일자: 2023.10.16.
- 라. 회부일자: 2023.10.23.

2. 제 안 사 유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을 비롯한 1군 발암물질로 인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시장은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시장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악화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시장의 사무인 동 법 제13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개정안	수정(안)
제4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생략)
